

## 2025년도 우수학자지원사업 신청요강 FAQs

### I. 신청자격 등

#### 1. (신청자격-일반) 우수학자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으로, 저서가 꼭 있어야 합니까?

- 예, 그렇습니다. 본 사업의 신청자격 중 하나인 “연구업적 1,200% 이상” 중에는 **전문 학술저·역서 업적이 반드시 포함**되어야 합니다. 따라서, 논문 실적이 많더라도 전문 학술 저·역서 실적이 없는 경우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요건 탈락됩니다.  
※ 저역서 실적의 경우 인문학 분야 신청 시 450%, 사회과학 분야 신청 시 300%, 예술 및 체육학 분야 신청 시 300% 이상이어야 함

#### 2. (신청자격-추천 학회) 추천 학회의 기준과 학회 당 추천인 수는 어떻게 됩니까?

- 추천 학회는 **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등재 학술지 발행학회**에 한하며, **학회별로 2인까지만 추천할 수 있습니다.** 추천 시 반드시 학회 편집위원회,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내부협의회 등의 개최를 통해 추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(**추천서 작성 시 해당 위원회 또는 이사회 등의 개최 내역을 기재하여야 함**), 이는 학회장 개인이 연구자를 추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.
- 학회장 개인 자격으로서의 추천은 인정되지 않으므로, 학회장 개인 도장이 아닌 학회의 공식 직인이 날인되어야 합니다.
- 추천이 가능한 학회는 재단 등재지를 발행하는 학회에 한하므로, 등재 후보지 발행 학회의 추천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 이를 위해 학회장 추천서와 함께 **학술지 등재 확인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**하여야 합니다.

#### 3. (신청자격-추천 연구자) 국내·외 연구자 추천 시 기준과 추천인 수는 어떻게 됩니까?

- 국내·외 연구자 추천 시, 3인 이상의\*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. 추천자의 자격은 ⑦박사 학위 취득 후 15년 이상 **또는**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임용된 지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연구자, ⑨**신청자와 동일대학 출신(학사·석사·박사학위)** 또는 현 소속기관의 **연구자·지도교수 등 특수 관계자가 아닌 연구자로**, ⑩, ⑪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.  
※ 신청자격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, 추천인 수가 많다고 해서 가점 등은 없음

#### 4. (학생연구자①) 직접비 중 25백만원이 “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”로 고정이 되어있던데요, 학생연구자란 무엇인가요?

- 학생연구자는 학사과정생, 석사과정생, 박사과정생 중 연구 수행을 보조하기 위해 참여하는 **학생 신분의 연구자를** 말합니다. 『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사업비 사용기준』 등에 따른 학생연구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가. 「고등교육법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 · 학사학위과정 · 석사학위과정 · 학석사통합과정 · 박사학위과정 · 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(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을 포함하며, 근로계약을 체결한 휴학생을 포함할 수 있다)

나. “가”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 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

→ 상기 학생연구자별 학위 기준에 따른 학생인건비 상한선은 다음과 같습니다.

구분	인건비	비고
학사과정생(전문학사과정 포함)	월 100만원 이내	※ 졸업생은 학생연구자로 참여 불가
석사과정생 또는 수료자	월 180만원 이내	
박사과정생 또는 수료자	월 250만원 이내	

### 5. (학생연구자②) 타교의 학생연구자도 참여가 가능한가요?

→ 예, 타교 재학생도 학생연구자로 참여 가능합니다.

### 6. (학생연구자③)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내 타 사업에서 학생인건비를 받고 있는 학생연구자가 참여하는 경우, 학생인건비를 어떻게 분할 지급해야 하나요?

→ 주관연구기관 소속 학생의 경우, 2개 사업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. 단, 학생인건비 최대 금액을 초과해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.

※ (예시) 학사과정(월 100만원 이내) : A사업(70만원) + B사업(30만원) = 100만원

## II. 회계연도 일치 관련

### 1. (회계연도 일치) 회계연도 일치란 어떤 건가요?

→ 회계연도 일치란, 정부의 예산 절감 및 대학 회계연도와의 추진 일정 연계를 위해, 사업년도를 대학 회계연도와 일치시키기 위한 방침입니다.

→ 회계연도 일치에 따라, 총 5년(60개월)의 연구기간이 아래와 같이 6개 연차로 나뉘어 적용됩니다.

단계 구분	연도	기간
1단계 (33개월)	1차년도(9개월)	2025.6.1.~2026.2.28.
	2차년도(12개월)	2026.3.1.~2027.2.28.
	3차년도(12개월)	2027.3.1.~2028.2.29.
2단계 (27개월)	4차년도(12개월)	2028.3.1.~2029.2.28.
	5차년도(12개월)	2029.3.1.~2030.2.28.
	6차년도(3개월)	2030.3.1.~2030.5.31.

### III. 신청 시 주의사항 등

1. **(연구업적-KRI 등록)** 신청자격 중 연구업적 1,200%가 있던데, 어떻게 산정하나요?

- 논문의 경우 게재된 학술지의 종류와 저자 수에 따라, 저서의 경우 저자 수에 따라 업적 인정률(%)이 달라집니다. 세부 내용은 신청요강에 안내된 [업적 산정 세부내역 일람표]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울러, **업적으로 기재하신 모든 성과물들은(논문 및 저서) 한국연구재단 e-R&D 시스템을 통해 과제를 신청하기 전에 한국연구자정보(KRI)에 입력되어 있어야 하므로, 사전에 KRI 연구업적 정보를 입력 및 업데이트하시기 바랍니다.**

2. **(연구업적-전문학술저서)** 연구업적 1,200% 이상 요건 중 전문학술저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전문학술저서는 어떻게 구분합니까?

- 전문학술저서는 ISBN을 부여받아 정식으로 출판된 도서 중, **ISBN 번호의 독자대상 기호가 “9”인 도서**를 말합니다.
- 구체적인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 ISBN·ISSN·납본 시스템의 ISBN 소개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(URL : <https://www.nl.go.kr/seoji/contents/S20101050000.do>)

3. **(연구업적-논문)** 연구업적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논문이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맞지만, 본인이 제1저자가 아니고 공동저자입니다. 이 경우에도 업적으로 산정 가능한가요?

- 최근 10년 내 한국연구재단 등재(후보)학술지 및 우수등재학술지, 국제저명 학술지 (SCI(E), A&HCI·SSCI, SCOPUS)에 게재된 논문이라면, 주저자/공동저자 여부와 상관 없이 업적으로 산정 가능합니다.
- ① 학술대회 발표논문 인정여부: 학술대회 발표논문은 연구업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으며, 상기 학술지에 정식 게재한 논문만 연구업적으로 인정함  
② 박사학위 논문의 연구업적 인정여부: 박사학위 논문은 연구업적으로 불인정

4. **(연구업적-발간예정논문)** 신청 마감일 이후에 발간되는 학술지(등재지)에 연구논문 게재가 확정되어 있습니다. 이 경우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연구업적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?

- 아니오, **게재예정증명서로는 연구업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.** 신청 마감일까지 게재가 완료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. 마찬가지로 저·역서의 경우에도 신청 마감일 까지 출판이 완료되어야 합니다.

5. **(연구기간-3+2년)** 연구기간이 3+2년이던데, 어떤 의미인가요?

- 총 5년을 연구기간으로 하되, 5년을 연속으로 지원하지는 않고 3년(1단계) 종료 시점에 단계평가를 실시하여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이후 2년(2년)에 대한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.

**6. (대표연구업적)** 대표 연구업적을 2편씩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, 자세한 제출방법이 궁금합니다. 그리고 대표 연구업적이 저서의 경우 우편으로 제출하면 안되나요?

- 대표 연구업적은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출판 및 게재가 완료된 신청자의 전체 연구 업적 중(논문, 저·역서 등)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연구업적 **2종의 원문 전체를 PDF 파일로 탑재**해 주시면 됩니다. (편집 등이 가능한 한글 파일로는 제출 불가하며, 제출서류로 인정되지 않음)
- 우편 접수는 받지 않으며, 온라인으로 탑재해야 합니다.

**7. (저술계획서-작성 언어)** 저술계획서는 꼭 한국어로 작성해야 하나요?

- 기본적으로는 한국어로 작성하실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, 연구자의 개인적 상황을 고려하여 영문으로 작성하시는 것 역시 인정하고 있습니다. 단, 평가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한국어 및 영어를 제외한 기타 언어의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.
- 단, "연구요약문"의 경우 선정 후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내용이므로 반드시 한국어로 작성해 주시고, 저술계획서 양식 중 "한글로 작성"으로 명시된 부분 역시 한국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 IV. 제출서류의 준비 및 작성

### 1. (저술계획서) 작성 분량 및 방법 등

- 저술계획서는 20쪽 이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 글자 크기는 13point를 권장하며 줄 간격은 조정이 가능하나, 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, 파일 크기는 통상적으로 1GB 이하를 권장합니다.

### 2. (학회장 추천서) 작성 및 제출방법 등

- **학회장 직인 필수**: 학회장 추천서는 반드시 **학회장의 직인** 날인 후(직인이 없을 경우 인정되지 않음), 스캔하여 **이미지 파일 또는 PDF 파일로 탑재하여야 합니다**.
- 추천 사유: 학회에서는 추천 사유를 상세하게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.
- 추천서 작성방법: 이사회 또는 편집위원회 개최 여부, 학회 내부 추천 절차, 평가 방법, 평가기준(양적평가, 질적평가 등) 등을 상세하게 명시하여 주십시오. 다만, 평가기준에서 항목 및 배점 등까지 명시하실 필요는 없으며, 재단 및 심사자가 학회에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연구자를 추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.

※ 2개 이상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는 경우, 각 학회의 추천서를 하나의 파일로 만든 뒤 (ex: 하나의 파일로 스캔 또는 하나의 한글 파일에 이미지 파일로 첨부 등) 탑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 **압축 형식의 파일은 탑재가 불가합니다**.

### 3. (국내·외 연구자 추천서) 작성 및 제출방법 등

- 국내·외 연구자 추천서는 반드시 추천자의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 또는 PDF 파일로 탑재하여야 합니다.
 

※ 3인 이상의 추천서 탑재 시, 하나의 파일로 탑재하여야 합니다. 즉, 3인의 추천서를 하나의 파일로 스캔하거나(PDF 또는 이미지 파일) 하나의 한글 파일에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여 탑재하시기 바랍니다. **압축 형식의 파일은 탑재가 불가합니다.**
- 추천 사유: 추천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한 추천 사유를 상세하게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.

### 4. (학술활동 이력서) 작성 방법 등

- 학술활동 이력서는 연구자의 주요 학술활동 경력사항을 제시하는 자료입니다. 이는 평가 시 각 연구자들의 주요 경력사항을 확인하고, 활동 정도를 참고하고자 하는 것으로, 신청자의 경력 중에서 중요한 경력 위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.
- ※ 이때, 작성 가능한 활동의 범위 등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. 학문 분야별 특성 등을 감안하시어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업적이나 경력 평가 시 중요하게 판단되는 사항 등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. 해당 이력에 대한 별도의 증빙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, 허위로 작성 시 선정이 취소되며, 추가적인 제재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수상은 정부기관 및 학회 등에서 받은 수상 경력을 말하며, 학회 활동은 학회의 편집위원 또는 임원 등의 경력, 위원회는 정부 및 외부 단체의 위원회 활동 경력, 특허는 국내·외 특허 보유를 의미합니다.

### 5. (연구논문 목록) 별도로 제공되는 소정의 엑셀 양식에 따라 작성할 것

- 사업 신청을 위한 업적 산정에 필요한 연구논문 목록으로서, SCI(E), SSCI, A&HCI, SCOPUS, 재단 등재(후보)학술지 및 우수등재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의 목록을 "연구 논문목록(연구업적산정) 양식"에 작성합니다.
- 환산기준: 신청요강 5쪽, [붙임2. 업적 산정 세부내역 일람표] 참고
- 업적산정기간: 최근 10년간(2015.1.1.~온라인 신청 마감일) 게재가 완료된 논문
- 동일한 업적물은 발간 형태가 다르더라도 1건으로만 산정합니다.
 

※ 예) 한글로 발표한 논문을 영문으로 다시 발표하는 경우 등
- 저자 수는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총 저자 수를 기재합니다.
- 재단 등재(후보) 학술지의 인정여부는 각 학회지의 등재일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. 현재는 등재학술지이나 게재 당시에는 등재후보지였다면 등재후보지로 산정합니다. 마찬가지로, 현재는 등재후보지이나 게재 당시에는 등재후보지가 아니었다면 업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등재(후보) 학술지 기준일: 등록된 해에 게재된 논문은 등록 당시의 등급에 따름
 

※ 등재(후보) 학술지 수록 여부는 해당 학술지가 재단 등재지로 선정된 해의 1월 1일 이후 발행된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에 한함

※ 등재(후보) 학술지 목록 : 한국학술지인용색인 홈페이지 참고([www.kci.go.kr](http://www.kci.go.kr))

## 6. (저서목록) 별도로 제공되는 소정의 엑셀 양식에 따라 작성할 것

- 사업 신청을 위한 업적 산정에 필요한 저서 목록으로서, "저서목록(연구업적산정) 양식"에 작성합니다.
- 저서는 연구업적 기본요건인 1,200%에 포함되며, **학문 분야별로 아래와 같이 저서 업적을 필수로 포함하여야 합니다.**
  - ※ 인문학 450%, 사회과학 300%, 예술체육 300% 이상. 해당요건 부적합 시 요건 탈락함
- 환산기준: 신청요강 및 [붙임 2. 업적 산정 세부내역 일람표] 참고
- 업적산정기간: 최근 10년간(2015.1.1.~온라인 신청 마감일) 출판이 완료된 저서
- 저자 수는 **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총 저자 수**를 기재합니다.
- ISBN 번호: 해당 저(역)서의 ISBN 번호를 빠짐없이 기재하되, **부가기호표(5자리)\*가 있는 경우 해당 번호까지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.**

\* ISBN 기재란에 ISBN 번호 13자리 뒤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5자리 숫자를 말합니다.

## V. 기타 사항

### 1. (IRB심의 관련) IRB 심의는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?

→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동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대상 연구 등에 해당되는 연구과제의 경우,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
\* 인간대상연구란 "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,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,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"이며, IRB 심의를 받도록 정해져 있음.

→ 과제 선정 후 각 소속기관(대학 등)의 IRB에 관련 사항을 확인하시어 해당 절차에 따라 IRB 심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 IRB 심의 결과 제출·관리 등은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, 연구책임자와 주관연구기관(IRB포함)에서 담당합니다.

→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가 IRB 심의대상인지 여부 등을 포함한 **IRB 관련 사항은 소속기관의 IRB 심의위원회에 문의**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문의처: 각 대학 IRB심의위원회(단, 대학 내 IRB 심의위원회가 없는 경우 국가생명윤리 정책원에 문의 [www.nibp.kr](http://www.nibp.kr))

### 2. (지원분야) '인문사회 분야'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지원하나요?

→ 한국연구재단의 '학술연구분야분류표'에 의한 인문학, 사회과학, 예술체육 분야를 말하며, 자연과학 중 생활과학 일부와 복합학 분야가 포함됩니다.

→ 신규과제 신청 시 연구책임자의 전공과 상관없이,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의 주제가 인문사회 분야인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

※ 학술연구분야 분류표 확인 :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사업안내 → 사업 자료실 → 연구분야분류 → [학술연구분야분류](#)[클릭]

3. **(연구윤리교육)** 과제에 선정되는 경우 “연구윤리 교육”을 이수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,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-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연구자의 연구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과제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정하는 ‘연구윤리 교육’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
- 단 ‘연구윤리 교육’을 기 이수한 연구자는 이수한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므로 해당 기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(유효기간 종료 후에는 재이수 필요)
- 연구윤리 교육운영 기관: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(KIRD)
  - ※ 연구윤리 교육신청 홈페이지: 과학기술인 알파캠퍼스(<https://alpha-campus.kr/>)
  - ※ 이수 과정명: “연구책임자를 위한 연구윤리(인문사회계)”
  - ※ 본인의 연구자번호를 바르게 입력한 뒤 이수하여야 해당 이수정보가 정상적으로 연계됨